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규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28
----------	------

발의연월일 : 2017. 3. 28.

발의자 : 김규환 · 김상훈 · 김선동  
이주영 · 조배숙 · 김승희  
윤종필 · 정유섭 · 박명재  
최연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기교사제도는 지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할 우수 기능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대학교 졸업 교직 이수자들이 대량 양성되면서 사문화되어 있음.

그런데 2016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직업교육과정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이 검증된 산업현장의 우수 전문가를 교육현장으로 유인하여 산업현장과 교육을 하나로 연결시켜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중심 실습수업이 운영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실기능력을 갖춘 산업체 현장의 숙련된 우수 인력인 국제기능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소정의 교직과목 및 학점을 이수 및 취득한 경우 실기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실기교육 활성화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

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별표 2).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실기교사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에 한한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